

중재 판정 사례 ⑤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II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품 목	전기설비 개보수공사	
신청금액	414,937,442원	중재비용: 5,262,155원
신청일	2003. 4. 8.	
판정일	2004. 1. 31.	
처리기간	278일	
판정금액	238,090,864원	

① 사건개요

A는 B와 전자입찰 방식으로 ○○연구원 전기설비 개보수공사에 관해 2001. 11. 26.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추가도급계약이 체결됐다.

A는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철거공사비와 케이블 및 조명기구, 천정 석고타일 수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 관로공사 노면 및 조정 원상복구비, 접지공사비, 변전실 및 분전반 위치변경비용, 조명공사 스위치 타입 및 방송용 스피커 타입 변경비용, 소방간선 비상전 원반 및 케이블 트레이 추가설치비, 각종 미시공 공사비 등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B는 A의 각 항목별 추가공사비 등 청구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근거없다며 반박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의 각 항목별 청구 27가지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상세히 검토해 인정할 것은 정확한 판단에 따라 인정했고 증거부족이나 B의 주장이 옳은 것은 그 내용을 받아들여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Ⅲ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도로 가로등 공사	
신청금액	874,735,000원	중재비용: 9,601,042원
신청일	2003. 5. 9.	
판정일	2004. 6. 15.	
처리기간	371일	
판정금액	0원	

① 사건개요

A는 2001. 7.에 B가 실시한 가로등공사를 수주, 2001. 7. 16.에 공사계약과 추가계약을 체결해 2002. 12. 준공하였다. A는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달라 수회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미약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중요부분을 일축해 A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B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A는 오류투성이인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공하게 해 손해를 입혔기에 그 항목에 대해 B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한다.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공사계약 51조의 분쟁해결 규정은 중재조항이 아니며, A가 추가로 청구하고 있는 공사비부분 총액공사계약인 이 사건에 있어서 입찰당시에 확정된 공사의 설계내용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B의 본안건 항변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입찰 방식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이나 공종별 공사비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계약당시 계약당사자가 계획하는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전체공사비를 공사금액으로 정하여 그 공사비에 관한 공사계약이 약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A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총액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B가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준칙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5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과연 A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해 본 결과, A의 주장이 미흡하고 아무런 합리적 증거도 없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3.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Ⅳ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청사 신축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신청금액	352,552,000원	중재비용: 5,029,036원
신청일	2003. 5. 29.	
판정일	2003. 12. 24.	
처리기간	205일	
판정금액	165,200,000원	

① 사건개요

A는 2001. 7. 27. B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청사 신축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45,000,000원, 계약기간 2001. 8. 2.부터 2001. 12. 31.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B는 이 계약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수행하던 중 연면적이 증가하여 2차례에 걸쳐 용역비증액 및 대지확정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실시설계에 관한 과업만 지시하고 기본설계 납품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 요청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B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A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추가업무 내지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추가업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가된 설계용역대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B는 분쟁발생 기간이 188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이제 와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것으로써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고, 설계용역비 증액이 불가능하여 당초 물량으로 과업을 완료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B의 조치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계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한 건의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당시 이후에 다른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추가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할 시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



소비자의 호기심을 짓궂게 괴롭힌다 - 티저 광고

광고 중에서 유난히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에 있다. 바로 티저 광고다. 티저 광고에서 티저(teaser)는 ‘괴롭힌다, 골리다’라는 뜻을 가진 ‘Tease’에서 비롯되었다.

티저 광고(teaser advertising)는 상품의 정체를 일시적으로 숨겨서 궁금하게 만듦으로써 상품에 대한 기대와 인지도를 넓혀가는 광고 방식을 말한다. 즉 광고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품과 관련된 기본 정보마저도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품이 이미 존재하며 곧 그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다가 그 베일을 벗고 상품의 정체가 제시되는 후속 광고가 뒤따른다.

이 티저 광고의 유래는 프랑스의 아브니어 정당의 정치 광고에서 시작됐다. 이 정당은 1981년 8월 말 파리 곳곳에 ‘9월 2일 뒷부분을 벗겠다.’는 글과 함께 비키니 차림의 젊은 여성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내걸었다. 그리고 9월 2일, 뒷부분을

벗은 사진과 함께 ‘9월 4일 아랫부분도 벗겠다.’는 글이 적힌 포스터를 붙여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9월 4일, 비록 뒷모습이기는 했지만 전라의 여성 사진과 더불어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담긴 포스터를 내붙였다. 당시에 이 광고는 크게 화제가 되었고 시민들의 눈길을 한동안 붙들어 댄다. 그때부터 티저 광고가 광고의 한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한 현대인들의 호기심, 그것을 자극하는 장시간의 괴롭힘, 그 후 시원하게 드러나는 정체……. 이런 심리는 이용한 티저 광고…….

하지만 호기심을 너무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는 자칫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광고 역시 가장 먼저 ‘인간’을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있을 때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